#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(안규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020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8.

발 의 자: 안규백·장종태·조인철

이개호 · 정진욱 · 이수진

추미애 • 이광희 • 박범계

김기표 · 정성호 · 안태준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

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세종대왕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, 세종대왕기념관 및 세종대왕박물관의 운영,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.

그러나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재정 부족으로 인해 주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우며,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기념관 및 박물관의 운영과 관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.

이에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재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, 세종대왕의업적을 기념하고 계승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세종대왕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기념사업회는 세종대왕종합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, 집현전대학원 대학교의 설립·운영, 세종대왕 유적의 보존·관리·조사·홍보 및 연구,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함(안 제5조).
- 다. 기념사업회에 회장 1명, 부회장 3명 이내를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,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,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,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임면도록 함(안 제6조).
- 라.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두고,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둠(안 제10조 및 제12조).
- 마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,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음(안 제13조).
- 바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

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(안 제14조).

- 사. 기념사업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, 매 회계연도의 세입·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(안 제17조 및 제18조).
- 아. 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·교육기관·연구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 게 자료의 열람·복사·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(안 제19조).
- 자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함(안 제20조).

##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세종대왕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법인격) 세종대왕기념사업회(이하 "기념사업회"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한다.
- 제3조(설립) ① 기념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목적
  - 2. 명칭
  - 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  - 4. 임원의 성명과 주소
  - 5. 공고의 방법
- 제4조(정관)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.
  - 1. 목적
  - 2. 명칭

- 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- 4.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
- 5. 조직에 관한 사항
- 6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- 7.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8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- 9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10.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
- ②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5조(사업)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- 1. 세종대왕종합기념관(이하 "기념관"이라 한다)의 건립 및 운영
  - 2. 집현전대학원대학교의 설립 및 운영
  - 3. 세종대왕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의 수집·보존·관리·전 시·조사·홍보·연구 및 전산화
  - 4. 세종대왕 유적의 보존・관리・조사・홍보 및 연구
  - 5. 세종대왕의 추모와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
  - 6.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에 대한 홍보와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
  - 7.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
  - 8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

- 제6조(임원) 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, 부회장 3명 이내를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
  - ②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(任免)하고,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(選任)하며,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.
  - ③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.
  - ④ 임원 중 상임인 임원은 3명 이내로 하되, 상임으로 하는 임원의 대상과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
- 제7조(임원의 임기) ①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각각 연임할 수 있다.
  -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8조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, 그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  -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명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정한다.
  -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- ④ 감사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.
- 제9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 -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
- 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3.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사람
- 제10조(이사회)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 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.
  - ②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
  -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(互選)하며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호선한 다.
  -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재적이사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- ⑤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제11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 다.
  - 1.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- 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- 3. 기념사업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- 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 - 5.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

- 6.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7. 그 밖에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회의 에 부치는 사항
- 제12조(사무처)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.
  -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- 제13조(보조금 및 출연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  - ② 개인, 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있다.
- 제14조(국·공유재산의 무상 대부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.
- 제15조(관람료 및 이용료)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의 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.
- 제16조(회계연도)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17조(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) ①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 되기 전까지 문화체육

-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는 목표, 방침,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 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을 명백히 하 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 다.
- 제18조(결산 보고)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·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 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자료 제공의 요청) ① 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교육기관·연구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세종대왕기념사업 관련자료의 열람·복사·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료 소장자에게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지도·감독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 ·감독한다.
- 제21조(준용)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과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는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  - ②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
  - ③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경우에는 「민법」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.
  - ④ 이 법에 따른 기념사업회는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모든 권리·의무와 재산 관계를 승계한다.
  - ⑤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기념사업회의 임직원으로 보며,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.